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개정 2014.8.8>

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(제10조의3 관련)

1. 일반 기준

- 가.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의 구를 말한다.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에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각각의 사업허가를 받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관할지역별로 구부하여 적용하다.
- 나. 사업의 제한은 위반행위가 발생된 시·군·구를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적 용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(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.
- 라. 허가관청이 주의·경고를 하는 것을 제외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 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마.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, 허가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.
 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도시가스사 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- 바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설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

하여야 한다.

2. 위반행위별 처분기준

이 비 체 이	키러 버그	행정 처분 기준			
위 반 행위	관련 법규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위반
1. 도시가스사업 허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가기준에 미달하게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된 경우	항제2호	(3일)	(20일)	(60일)	
	- '				
2. 고의나 과실로 공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중 또는 사용자에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게 현저한 위해를	항제3호	(10일)	(60일)	(90일)	
끼친 경우					
3. 가스공급계획의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변경명령을 위반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한 경우	항제5호	(3일)	(10일)	(20일)	
4. 공급규정을 위반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하여 도시가스를	제9조제1	또는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공급한 경우	항제6호	제한(3일)	(20일)	(30일)	
5. 공급규정의 변경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승인 신청명령을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위반한 경우	항제7호	(3일)	(10일)	(20일)	
6. 가스공급의 제한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명령을 위반한 경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우	항제8호	(3일)	(10일)	(20일)	
6의2. 품질기준에	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맞지 않는 도시가스		또는 제한			
를 공급·소비하거 나 공급·소비할 목	호의2	(3일)	(10일)	(20일)	
적으로 저장·운송					
또는 보관한 경우					
6의3. 품질검사를	법 제9조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받지 않거나 품질검	제1항제8	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사를 거부・방해・	호의3	(3일)	(10일)	(20일)	
기피한 경우 7. 안전관리규정의	벼	샤다 저 기	사다 저 기	샤나어 저 기	치기치시
	법 레O코레1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변경명령을 위반한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
경우	항제9호	(3일)	(10일)	(20일)	
8. 부적합한 가스공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급시설이나 가스사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용시설의 개선명령	항제10호	(3일)	(10일)	(20일)	
이나 위해방지 조					
치명령을 위반한					
경우					
8의2. 가스공급시설	법 제9조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을 시설별 시설기	제1항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준과 기술기준에	제9호의2	(3일)	(20일)	(60일)	
적합하도록 유지하					
지 아니한 경우					
9. 가스공급시설의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이전ㆍ정지ㆍ제한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명령이나 도시가스	항제11호	(3일)	(10일)	(20일)	
의 폐기명령을 위					
반한 경우					
10. 안전관리자의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해임요구에 정당한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사유없이 응하지	항제12호	(3일)	(10일)	(30일)	
아니한 경우					
11. 조정명령을 위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반한 경우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·
	항제13호	(3일)	(10일)	(20일)	
12. 공급권역의 조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정 및 사업의 통폐	제9조제1	또는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합 명령을 위반한	항제14호	제한(3일)	(10일)	(20일)	
경우					
13. 사업에 관한 보	법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허가취소
고명령 등을 이행	제9조제1	또는 제한	또는 제한	또는 제한	
하지 않은 경우	항제15 •	(3일)	(10일)	(30일)	
	16호				